

## 담당자 및 연락처

목사를 상대로한 제보의 경우  
예수교 장로회 사무처 사무원에게  
연락하십시오.

(name)

(address)

(phone number)

교회의 리더나 신자를 상대로한  
제보의 경우 담당교회 목사님에게  
연락하십시오.

(name)

(address)

(phone number)

성폭력 혐의자의 이름이나 직위를  
잘모를 경우에는 다음으로 연락하세요.

Susan Shaffer  
Ministry and Church Vocations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50 Wynford Drive  
Toronto ON M3C 1J7  
Phone: (416) 441-1111  
1-800-619-7301

캐나다 예수 장로회 소속 모든  
장로교회는 1998년 성추행 및  
성희롱에 관한 교회방침과 2001년  
성명서 사본을 비치 및  
교부하고 있습니다.

구입문의 (\$6.00):

The Book Room

50 Wynford Drive

Toronto ON M3C 1J7

Phone: (416) 441-1111

or 1-800-619-7301

Fax: (416) 441-2825

E-mail: [bookroom@presbyterian.ca](mailto:bookroom@presbyterian.ca)

또는 예수교 장로회 홈페이지에서  
Official Documents, Policies & Logo

란을 참조,

[www.presbyterian.ca/resources/online](http://www.presbyterian.ca/resources/online)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  
입니다.교회는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 캐나다 예수교 장로회

추가 안내서가 필요할 경우 원본을  
복사하시거나 The Book Room에서  
(25매 \$3.25)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 성폭 력에 관한 방침

교회의 소명은 하나님의 사  
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정의  
를 구현하는 것 입니다.

교회는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캐나다 예수교 장로회

## 안식처

교회 및 이하 산하조직은 지역사회의 안식처이며 성폭력이 허용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공동체에 예수님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곳이므로 각종 행사를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모든 단체는 이 정책의 대상이 됩니다. 교회를 위한 모든 봉사자 특히 성직자, 지도자,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은 성적 관련 품행, 직권 및 직위를 기독교 윤리 강령에 따라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성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곳입니다.**

## 교회의 방침

캐나다 예수교 장로회는 교회 성직자, 임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 의한 일체의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사태의 심각성에 기인하여 교회는 교회안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할것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제보가 있을시 교회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와 함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처할 것이며 제보자와 성폭력 혐의자를 공평정대하게 대할 것입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과 진상을 조사한 후 성폭력에 관한 교회 방침에 의거하여 처리될 것입니다.

## 성추행이란?

성추행의 범주에 속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원치 않는 성적 접촉
- ◆ 간음, 성기관 접촉, 애무, 추행, 성적 함의를 포함한 언어, 음란물 전시 행위
- ◆ 성폭행, 캐나다 형법에 규정된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성범죄 행위
- ◆ 성희롱
- ◆ 배우자 폭력행위

## 성희롱이란?

성희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일회적 또는 상습적인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본인이 원치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결정권자의 직위를 이용한 성적요구
- ◆ 직위자의 성요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권한을 이용한 보복 및 협박행위

## 지도자들에 대한 제한

교회리더의 직위는 권한과 믿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지도자들은 선교활동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성(性)적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 ◆ 청소년부 리더들은 청소년부의 일원들과의 데이트가 허용되지 않으며,
- ◆ 목사의 경우 사목활동 대상자와의 일체의 성(性)적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피해대상자의 경우

성추행 혹은 성희롱의 피해가 있다고 여겨질때

- ◆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 ◆ 미소나 사과의 표시없이 정확한 거부의를 당사자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 ◆ 성추행이나 성희롱의 사건 발생시 발생한 사건, 행동, 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후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증거가 될만한 자료 - 가해자로부터의 서신이나 쪽지등 - 와 함께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 두십시오.
- ◆ 도움이 될만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연락처는 다음장을 참조하세요) 피해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조처될것입니다.

만일 타인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피해 사례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

- ◆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 ◆ 해당기관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다음장을 참조하세요)

만일 다른 사람이 본인을 상대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토로할 경우:

- ◆ 예수교 장로회의 해당기관이나 해당교회에 위 사실이 반드시 알려져야 합니다. (연락처는 다음장을 참조하세요)

## 모든 제보자들에게 알립

예수교 장로회와 교회는:

- ◆ 교회방침에 의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 규명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 피해자에게는 피해보자와 피해보자의 가족들로부터 교회차원의 보호가 있을 것 입니다.
  - ◆ 도움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조언을 해드릴 것 입니다.
-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그리고 피해보자는:
- ◆ 서로 협상절충하려 해서는 안되며
  - ◆ 개인적으로 만나서는 안됩니다.